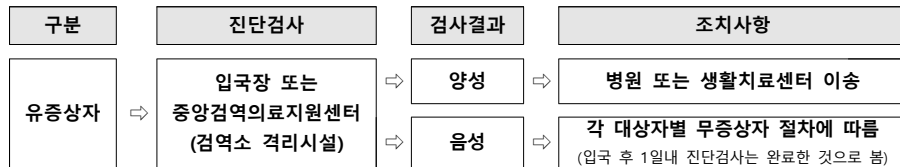


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(공항 입국자용)

<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, '22.1.5.(수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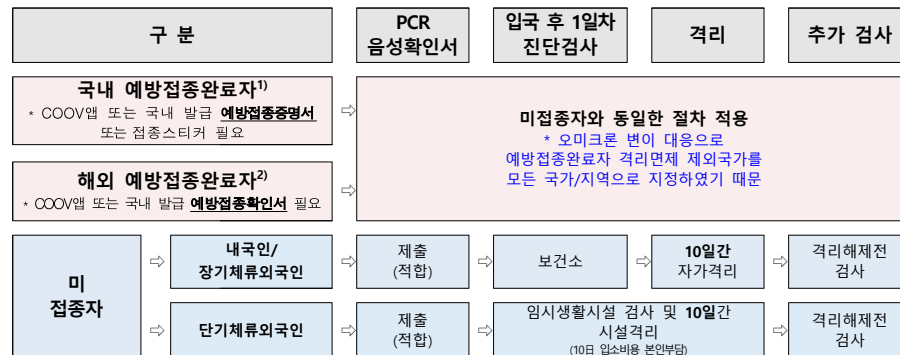
- ◆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(부적합 포함)한 내·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
 - * 단, 도착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,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(비용 자부담)+자가격리 5일,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됨
 - ※ PCR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공지사항 내 'PCR음성확인서 제출 FAQ' 참고
 - ◆ 오미크론 변이 유행국가 시설격리 조치, 아프리카 發 입국자 진단검사 등 강화
 -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11개국* 發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불허
 - * 남아공, 보츠와나, 짐바브웨, 나미비아, 레소토, 에스와티니, 모잠비크, 말라위, 나이지리아, 가나, 잠비아
 - ◆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-> 한시적으로 '모든 국가/지역' 지정(∼'22.2.3.)
 - 예방접종완료자라도 10일간 의무 격리
- ※ 오미크론 변이 발생 관련 대상국가 및 입국불허 등 조치사항은 변동 가능함(변동시 제안내)

□ 유증상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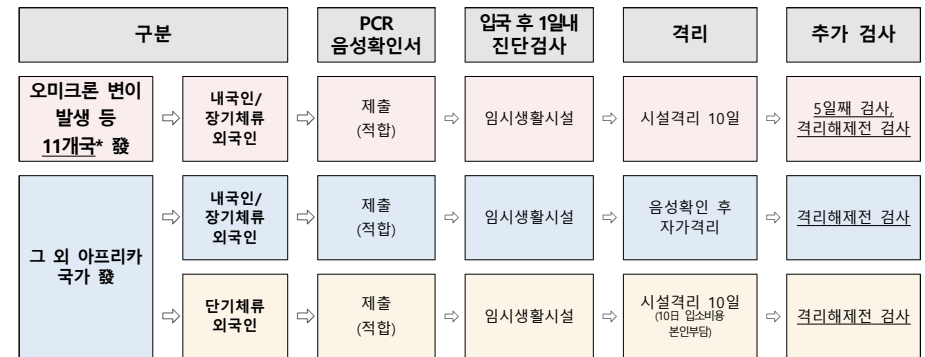
□ 무증상자

○ 일반 국가 發 입국자



- 1)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, COOV(쿠브)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
 - * 국내1회+국외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,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·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, '국내 예방접종완료자'로 간주함(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)
 - 2)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, COOV(쿠브)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(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)
 - * 입국 당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쪽 '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' 참고
- ※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nip.kdca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출력 가능하며,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
- ※ 1), 2) 대상자의 경우, COOV앱 등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 가능함(유효기간 경과시 불가)

○ 고위험국가 發 입국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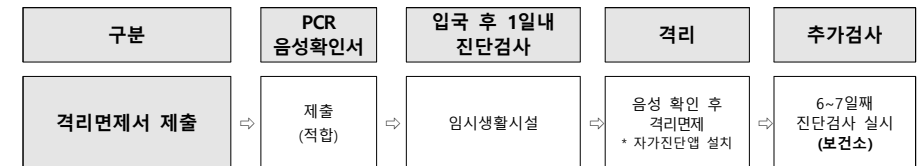


* 남아공, 보츠와나, 짐바브웨, 나미비아, 레소토, 에스와티니, 모잠비크, 말라위, 나이지리아, 가나, 잠비아

○ 격리면제서 소지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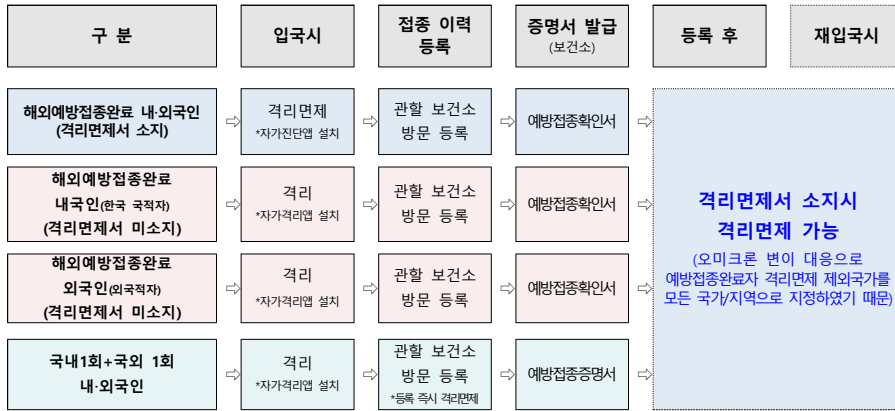
세무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「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」에 따름

※ A1(외교)·A2(공무)·A3(협정) 비자소지자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(또는 관계부처)에서 '격리면제서'를 사전발급 받은 경우 등



※ SOFA협정 적용자(주한미군, 관련자)는 전원 주한미군 부대에서 PCR검사 실시(단, 아프리카 發 입국자는 '음성' 확인시까지 임시생활시설 대기해야 함)

□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(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)



※ 상기 대상자의 경우, 관할 보건소에서 해외 접종이력을 등록*하여야 하며 등록 이후 확진자 밀접접촉시,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가능

* ①성명, ②생년월일, ③백신종류, ④접종일, ⑤접종기관명,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.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,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(개인 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)를 함께 제출해야 함.

※ 국내 시스템 등록 후 재입국 시, **입국 당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함**